

증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[2003. 12. 15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264호
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559호
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15. 10. 2 조례 제601호
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평군수가 선임하는 증인·참고인·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. 1, 2015. 10. 2>

제2조(실비변상의 범위) 증인·참고인·감정인(이하 “증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, 현지교통비, 식비, 숙박료로 한다. <개정 2015. 1. 1>

제3조(실비변상액)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0. 2>

제4조(지급)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. <개정 2015. 10. 2>

제5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. 1 조례 제559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2 조례 제60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